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6급·7급·8급·9급 직렬에 방재안전 직렬을 각각 추가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5급·6급 직렬에 기록연구직을 추가하며,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소속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일부 추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및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6항에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 증진

별표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5 다음에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85”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85 다음에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3”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

5”를 삭제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91”를 삭제하며,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7”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7 다음에 “행정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38”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38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3”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7”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8”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13”를 삭제하며, “기록연구사 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5 다음에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06”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06 다음에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86”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06”를 삭제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4”를 삭제하며,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 다음에 “행정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38”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38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3”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8”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13”를 삭제하며, “기록연구사 2”를 삭제한다.

별표 3 행정서기보 27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 농림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3의2 행정서기보 27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 농림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7 행정서기보 1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

고, “방호서기보 1”를 삭제, 방송무대서기보 “1”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7의2 행정서기보 1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방호서기보 1”를 삭제, 방송무대서기보 “1”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보 “1”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9 중 3급 또는 4급 이하 “94”를 “9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0 다음에 “전문경력관 4”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54”를 “14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46 다음에 “전문경력관 8”를 신설한다.

별표 1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19”를 “11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8 다음에 “전문경력관 1”를 신설한다.

별표 1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16”을 “10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6 다음에 “전문경력관 10”를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11월 30일”을 “2027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의2. (생략) <u><신설></u> 14. (생략) ⑦ ~ ⑫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3의2. (현행과 같음) <u>13의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 증진</u> 14.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27년</u>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5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은 <u>2025년 11</u> <u>월 30일</u>까지 존속한다.	<u>12월 31일</u>-----.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5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 <u>2027년 11</u> <u>월 30일</u>-----.
--	--

신 · 구정원대비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 <u><신 설></u>	· <u>185</u>	+185
<u>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 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193</u>	+193
<u>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u>	<u>185</u>	<u><삭 제></u>	-185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u>	<u>191</u>	<u><삭 제></u>	-191
·	·	·	

<u>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97</u>	+97
<u>행정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38</u>	+38
<u>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u>	<u><신 설></u>	<u>13</u>	+13
<u>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97</u>	<u><삭 제></u>	-97
<u>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38</u>	<u><삭 제></u>	-38
<u>행정서기보</u>	<u>13</u>	<u><삭 제></u>	-13
·	·	·	
<u>기록연구사</u>	<u>2</u>	<u><삭 제></u>	-2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206	+206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 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신 설>	186	+186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206	<삭 제>	-206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 신 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4	<삭 제>	-184
.	.	.	

<u>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91</u>	+91
<u>행정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38</u>	+38
<u>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u>	<u><신 설></u>	<u>13</u>	+13
<u>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91</u>	<u><삭 제></u>	-91
<u>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38</u>	<u><삭 제></u>	-38
<u>행정서기보</u>	<u>13</u>	<u><삭 제></u>	-13
.	.	.	
<u>기록연구사</u>	<u>2</u>	<u><삭 제></u>	-2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 <u><신 설></u>	· <u>1</u>	+1
· <u>농림운영서기보</u>	· <u>3</u>	· <u>2</u>	-1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 <u><신 설></u>	· <u>1</u>	+1
· <u>농림운영서기보</u>	· <u>3</u>	· <u>2</u>	-1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u>	· <u><신 설></u>	· <u>1</u>	+1
· <u>방호서기보</u>	· <u>1</u>	· <u><삭 제></u>	-1
· <u>방송무대서기보</u>	· <u>1</u>	· <u>2</u>	+1
· <u>사무운영서기보</u>	· <u>3</u>	· <u>2</u>	-1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u>	· <u><신 설></u>	· <u>1</u>	+1
· <u>방호서기보</u>	· <u>1</u>	· <u><삭 제></u>	-1
· <u>방송무대서기보</u>	· <u>1</u>	· <u>2</u>	+1
· <u>사무운영서기보</u>	· <u>3</u>	· <u>2</u>	-1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행정서기보</u>			<u>1</u>		<u>2</u>	+1	
		·		·	·		
<u>사무운영서기보</u>			<u>2</u>		<u>1</u>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3급 또는 4급 이하</u>	· <u>94</u>	· <u>90</u>	-4
<u>전문경력관</u>	<u><신 설></u>	<u>4</u>	+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3급 또는 4급 이하</u>	· <u>154</u>	· <u>146</u>	-8
<u>전문경력관</u>	<u><신 설></u>	<u>8</u>	+8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3급 또는 4급 이하</u>	· <u>119</u>	· <u>118</u>	-1
<u>전문경력관</u>	<u><신 설></u>	<u>1</u>	+1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3급 또는 4급 이하</u>	· <u>116</u>	· <u>106</u>	-10
<u>전문경력관</u>	<u><신 설></u>	<u>10</u>	+10